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하:기초법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낮은 보장수준과 까다로운 선정기준의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2개 단체와 수급당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초법공동행동은 권리보장활동, 법개정활동, 상담활동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된 복지제도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1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차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소개

1부. 빈곤층, 이러한 복지를 이용해봅시다 ————— 05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2부. 수급권자 권리 선언, 빈곤층 복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 25

- 수급신청을 해 봅시다
-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진짜 문제점, 이렇게 바꾸자 ————— 38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살인장벽 ‘부양의무자기준’
- 생활 필수지출조차 할 수 없는 생계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 현실성 없는 재산의 소득환산제와 가짜소득부과 전면 개편하자!
-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과 및 강제근로 조항 폐지하자!
- 찼다 뺏는 기초연금 없애고, 노인빈곤 줄이자!
- 주소지가 없어도 수급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4부. 부록 ————— 44

- 공공임대주택 정책 둘러보기(서울형 기초보장제도·긴급복지 포함)
- 의료지원정책 둘러보기
- 답답할 땐? 상담전화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을 소개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하 '기초법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낮은 보장수준과 까다로운 선정기준의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2개 단체와 수급당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초법 공동행동은 권리보장활동, 법개정활동, 상담활동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된 복지제도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지권리 안내수첩〉 발간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리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는 전 국민의 권리입니다.

누구나 빈곤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난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는 복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가난에 처한 이들이 복지제도를 이용하는데 낙인이나 편견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은 잘못된 것이며, 누구나 낙인 없이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 시행된 이후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낮은 보장수준과 까다로운 선정기준,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보장수준의 현실화를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의 절박한 요구는 후 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3. 복지수급의 권리는 '알 권리'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직접 신청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평등하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부당한 대우에 수급권자 스스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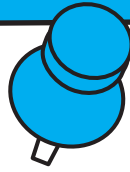
4. 수급권자가 빈곤정책을 제대로 만듭시다.

복지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수급을 받아야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수급권자입니다. 수급권자의 힘으로 빈곤정책을 제대로 만듭시다. 가난한 이들의 권리확대를 위해 함께 합시다.

〈복지권리 안내수첩〉이 빈곤문제 해결과 수급권자 권리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년유니온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사)참누리 /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장애해방열사 '단'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평화주민사랑방 / 참여연대 / 한국도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1부

빈곤층, 이러한 복지를 이용해 봅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¹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누가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지금 신청하세요!

1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2021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

표1. 급여별/가구급여별 선정 소득기준¹ (단위 : 원)

구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30%)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40%)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45%)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50%)
1인 가구	1,827,831	548,349	731,132	822,524	913,916
2인 가구	3,088,079	926,424	1,235,232	1,389,636	1,544,040
3인 가구	3,983,950	1,195,185	1,593,580	1,792,778	1,991,975
4인 가구	4,876,290	1,462,887	1,950,516	2,194,331	2,438,145
5인 가구	5,757,373	1,727,212	2,302,949	2,590,818	2,878,687
6인 가구	6,628,603	1,988,581	2,651,441	2,982,871	3,314,302
7인 가구	7,497,198	2,249,159	2,998,879	3,373,739	3,748,599

※ 위 기준보다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환산액 등이 소득으로 파악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1 전제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TIP. 소득공제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근로·사업소득	30%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접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4세 이하의 아동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근로·사업소득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75세 이상 노인(1946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지무원 및 상근예비역	근로·사업소득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 생계급여 자격이 유효한 조건부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자활소득에서 30%공제, 공제한 금액이 생계급여액보다 낮을 시 생계급여 지급(Gateway(게이트웨이) 참여자 제외)

※ 유의사항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하며, 자활근로 참여자로 자활근로 소득공제(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같을 경우 자활근로소득공제 우선적용
-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자동공제 됨

2. 수급신청자 재산기준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전세 혹은 보증금의 경우 95%를 재산가액으로 적용합니다.

표2. 근로능력유무/주거지규모별 기본재산액 (단위: 만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 능력자 가구	의료	5,400	3,400	2,900
	생계·주거·교육	6,900	4,200	3,500
근로 무능력자 가구	의료	8,500	6,500	6,000
	생계·주거·교육	10,000	7,300	6,600
주거용 재산한도액	의료	10,000	6,800	3,800
	생계·주거·교육	12,000	9,000	5,200

금융재산

▷ 의료, 관혼상제비 등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 원씩 공제합니다. (수급자, 부양의무 자 가구 모두 적용)

▷ 장기금융저축은 연 500만 원, 한도 3년 최대 1,500만 원 공제하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의 경우 가입기간이 3년 또는 5년인 상품으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수급자 가구만 해당)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2000cc미만의 자동차 1대가 허용되고, 다른 가구의 경우 100% 소득환산이 적용되어 사실상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경우 수급권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단,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예외로 합니다.

※ 위의 기준은 재산기준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일 뿐,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구청 혹은 87p 상담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즉, 부모, 자식, 계부, 계모, 사위, 며느리를 포함합니다. (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표3.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단위 : 원)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부양 능력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인	없음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미약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2,558,963 (2,705,190)	3,819,211 (3,819,211)	4,715,083 (4,715,083)	5,607,422 (5,607,422)	6,488,505 (6,488,505)
	있음	2,558,963 (2,705,190)	3,819,211 (3,819,211)	4,715,083 (4,715,083)	5,607,422 (5,607,422)	6,488,505 (6,488,505)
2인	없음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미약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3,063,063 (3,637,773)	4,323,311 (4,570,357)	5,219,182 (5,233,301)	6,111,522 (6,111,522)	6,992,605 (6,992,605)
	있음	3,063,063 (3,637,773)	4,323,311 (4,570,357)	5,219,182 (5,233,301)	6,111,522 (6,111,522)	6,992,605 (6,992,605)
3인	없음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미약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3,421,411 (4,300,718)	4,681,659 (5,233,301)	5,577,530 (5,896,246)	6,469,870 (6,556,578)	7,350,953 (7,350,953)
	있음	3,421,411 (4,300,718)	4,681,659 (5,233,301)	5,577,530 (5,896,246)	6,469,870 (6,556,578)	7,350,953 (7,350,953)
4인	없음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미약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3,778,347 (4,961,050)	5,038,595 (2,893,633)	5,934,466 (6,556,578)	6,826,806 (7,216,909)	7,707,889 (7,868,911)
	있음	3,778,347 (4,961,050)	5,038,595 (2,893,633)	5,934,466 (6,556,578)	6,826,806 (7,216,909)	7,707,889 (7,868,911)
5인	없음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미약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4,130,780 (5,613,051)	5,391,028 (6,545,634)	6,286,899 (7,208,579)	7,179,239 (7,868,911)	8,060,322 (8,520,912)
	있음	4,130,780 (5,613,051)	5,391,028 (6,545,634)	6,286,899 (7,208,579)	7,179,239 (7,868,911)	8,060,322 (8,520,912)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한 자녀가 수급가구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특례로 인한 부양의무자가구로 분리됩니다.

▷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구특성에 따라서 완화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 가구특성별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요건	완화내용
-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모두에 장애인연금 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수급신청자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 수급신청자 (2022년부터 전체 수급신청자에 적용될 예정)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소득 월 834만원 이하 / 재산 9억 원 이하)

▷ 이 외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양능력유무를 판정하여 수급자로 선정/탈락 되거나, 선정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 구간에 해당 시 간주부양비가 부과되어 급여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부양능력 판정 미약은 없음과 있음 금액 사이로, 간주부양비가 부과됩니다. (생계급여 10%, 의료급여 30% 또는 15%)

※ ()안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가구인 경우의 소득 기준입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중증장애인의 수만큼 가구원 수를 추가 산정합니다. 예) 3인이 함께 살고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1명 있는 경우, 4인 가구로 산정합니다

표4. 부양능력 판정 재산기준 (단위: 원)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구분		1인	2인
1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658,019	884,864
	대도시	일반재산*	259,635,537	270,541,529
		주거용재산**	291,271,073	313,083,058
	중소도시	일반재산	167,635,537	178,541,529
		주거용재산	199,271,073	221,083,058
	농어촌	일반재산	133,135,537	144,041,529
주거용재산		164,771,073	186,583,058	
2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884,864	1,111,708
	대도시	일반재산	270,541,529	281,447,521
		주거용재산	313,083,058	334,895,042
	중소도시	일반재산	178,541,529	189,447,521
		주거용재산	221,083,058	242,895,042
	농어촌	일반재산	144,041,529	154,947,521
주거용재산		186,583,058	208,395,042	
3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046,121	1,272,965
	대도시	일반재산	278,294,259	289,200,251
		주거용재산	328,588,517	350,400,502
	중소도시	일반재산	186,294,259	197,200,251
		주거용재산	236,588,517	258,400,502
	농어촌	일반재산	151,794,259	162,700,251
주거용재산		202,088,517	223,900,502	
4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206,742	1,433,586
	대도시	일반재산	286,016,432	296,922,424
		주거용재산	344,032,863	365,844,848
	중소도시	일반재산	194,016,432	204,922,424
		주거용재산	252,032,863	273,488,848
	농어촌	일반재산	159,516,432	170,422,424
주거용재산		217,532,863	239,344,848	
5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365,337	1,592,181
	대도시	일반재산	293,641,188	304,547,181
		주거용재산	359,282,377	381,094,362
	중소도시	일반재산	201,641,188	212,547,181
		주거용재산	267,282,377	289,094,362
	농어촌	일반재산	167,141,188	178,047,181
주거용재산		232,782,377	254,594,362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재산액

**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 재산액



3인	4인	5인
1,046,121	1,206,742	1,365,337
278,294,259	286,016,432	293,641,188
328,588,517	344,032,863	359,282,377
186,294,259	194,016,432	201,641,188
236,588,517	252,032,863	267,282,377
151,794,259	159,516,432	167,141,188
202,088,517	217,532,863	232,782,377
1,272,965	1,433,586	1,592,181
289,200,251	296,922,424	304,547,181
350,400,502	365,844,848	381,094,362
197,200,251	204,922,424	212,547,181
258,400,502	273,844,848	289,094,362
162,700,251	170,422,424	178,047,181
223,900,502	239,344,848	254,594,362
1,434,222	1,594,843	1,753,438
296,952,981	304,675,154	321,299,911
365,905,962	381,350,308	396,599,821
204,952,981	212,675,154	220,299,911
273,905,962	289,350,308	204,599,821
170,452,981	178,175,154	185,799,911
239,405,962	254,850,308	270,099,821
1,594,843	1,755,464	1,914,059
304,675,154	312,397,327	320,022,084
381,350,308	396,794,654	412,044,167
212,675,154	220,397,327	228,088,084
289,350,308	304,794,654	320,044,167
178,175,154	185,897,327	193,522,084
254,850,308	270,294,654	285,544,167
1,753,438	1,914,059	2,072,654
312,299,911	320,022,084	327,646,840
396,599,821	412,044,167	427,293,681
220,299,911	228,022,084	235,646,840
304,599,821	320,044,167	335,293,681
185,799,911	193,522,084	201,146,840
270,099,821	285,544,167	300,793,681



기초생활보장제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생계급여

생계급여액은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실제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제하여 책정됩니다.

표5. 가구규모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단위 : 원)

가구 규모	생계급여 급여기준(중위소득30%)
1인 가구	548,349
2인 가구	926,424
3인 가구	1,195,185
4인 가구	1,462,887
5인 가구	1,727,212
6인 가구	1,988,581
7인 가구	2,249,15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생계급여액에 1인 추가 시마다 260,578원을 더합니다.

2. 주거급여

① 임차가구

▷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전세 혹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에 연이율 4%를 적용하여 임차료를 환산한 금액과 그 외 별도 임차료를 합하여 산정합니다.

▷ 공공기관(LH, S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가 공공기관 명의의 계약으로 지급되며,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임대료를 부과·고지·수납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상의 가구에는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보증금을 임차료로 환산하는 방법 예시〉

예시1) 보증금 1,000만원, 월 임차료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 월 13,3만원 산출
산식 : $[1,000\text{만원} \times 0.04 \div 12] + 10\text{만원} = 3.3\text{만원} + 10\text{만원} = 13.3\text{만원}$

예시2) 보증금 2,000만원, 월 임차료 6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 월 12,6만원 산출
산식 : $[2,000\text{만원} \times 0.04 \div 12] + 6\text{만원} = 6.6\text{만원} + 6\text{만원} = 12.6\text{만원}$

〈임차료 보조금 산정방식〉

-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전액 지원
 -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 자기부담분*” 지원
- * 자기부담분 = $K(\text{자기부담율 } 0.3) \times Y(\text{소득인정액} - \text{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 지불임대료인 실질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

표6.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외)
1인 가구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가구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가구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가구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가구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가구	588,000	453,000	359,000	309,000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는 2인 증가할 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시킵니다. 천 원 단위는 절사하여 산정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합니다.

② 자가가구

- ▷ 구조 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 ▷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¹(38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 ▷ 노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항목)

〈주택의 노후도 평가 항목〉

구조안전(3개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설비상태(12개항목) :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 설비
 마감상태(4개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표7. 주택 개량 지원내용²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도서지역)	457만원 (5,027천원)	849만원 (9,339천원)	1,241만 원 (13,651천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기능·설비(창호, 난방공사, 단열 등)	구조, 거주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개량 공사 등)

※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보수범위

구분	중위소득 30% 이하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45% 이하
지원율	100%	90%	80%

- 1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 2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음

3. 의료급여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은 표8과 같습니다.

표8.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내용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특수장비촬영 (CT,MRI,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근로무능력가구, 상정특례 등록된 결핵환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 2종: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해 지원됩니다.(비급여, 선택진료과목 등 제외)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

※ 약국은 처방조제가 기준이며, 직접조제의 경우 900원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급여 시 급여항목별 30~90% 본인부담.

※ 2종 입원고위험임신부의 경우 급여비용의 5%, 제왕절개분만 산모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보상제도

▷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 매 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 2종 : 매 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 노인 틀니, 치과 임플란트, 선별 급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적용 제외됩니다.

※ 타 사업에서 지원받는 경우 제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

※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자신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의료비 지출 등 제외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상한제도

▷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매 30일간 5만 원 초과한 경우, 2종 수급자의 경우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됩니다. (단, 요양병원의 경우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 시 연간 1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병원비 영수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기재된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상한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시/군/구청에서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4. 교육급여

수급가구 내 학교에 다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9. 교육과정별 교육급여 지원 내용

지급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금액	286,000	376,000	448,000

※ 입학금 및 수업료와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전체를 지원합니다.

※ 연중상시 신청가능하나, 신청시에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시·도교육청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에 따른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해산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 1인당 7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 원(쌍둥이 출산시 140만 원)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장제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 1구당 8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긴급복지가 필요할 때!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했다는 지원요청 혹은 신고가 있을 때,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 확인을 통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한 후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즉, 긴급하게 복지가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한 후에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은 '긴급성'입니다. 이 '긴급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처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소득·재산 참고 기준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1천원, 4인 기준 3,657천원) 이하
- ▷ 재산¹ : 대도시(1억 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1억 1,800만원), 농어촌(1억 100만원 이하)
-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위기사유 및 완화된 재산기준 (한시적용)

추가 위기사유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⑥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⑦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1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긴급복지지원제도,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표10.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내용과 금액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69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00원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00원 이내(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21,600원 중 352,700원 고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000 / 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 원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 주거지원(최대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 지원
- ▷ 긴급복지지원 연장결정을 받은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다만, 의료지원의 경우 위기상황 여부 확인 후 지원가능

1. 생계지원

표11. 가구별 긴급생계급여 지원금액 (단위 : 원)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2. 의료지원

▷ 만성질환(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

※ 단, 의료법제17조(진단서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을 요하는 긴급한 진료ja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 타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타 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차액지원 가능

▷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암환자(소아·성인)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 다만,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보건소에서 위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보건소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한 경우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감당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가능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단,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선택진료비,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퇴원 전 긴급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2. 주거지원

표12. 가구별 긴급주거급여 지원금액 (단위 : 원)

지역	가구원수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상기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3. 교육지원

표13. 가구별 긴급교육급여 지원금액 (단위 : 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4. 그 밖의 지원

표14. 기타 긴급지원내용 및 금액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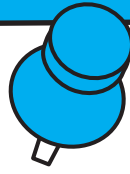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월 98,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한정 월별 지원

▷ 장제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법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전기요금: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을 의미함.

※ 다만, ①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② 1가구 최대 50만원이상 연체자(다만, 50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 납부하고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



2부

수급권자 권리선언, 빈곤층 복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수급신청, 이의신청시 꼭 알아두자!

수급신청을 해 봅시다

그림1.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과정



1. 수급신청

- ▷ 수급신청은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
- ▷ 구비해 갈 서류(필수): 신분증,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서, 급여를 받을 통장
- ▷ 아픈 곳이 있다면 각종 진단서도 꼭 떼어가세요.

수급신청 시 작성해야할 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 소득·재산 신고서
-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신청 시 작성해야할 서류 작성 예시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필수 입력사항

(1면)

- ① 신청인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기입
- ② 가족사항에는 함께 거주 중인 가족사항 기입
- ③ 부양의무자에는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기입
- ④ 급여계좌에는 실제 급여를 수령할 계좌정보 기입
- ⑤ 통지방법에는 연락받기 편한 방법에 체크 (모두 체크가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660606-1234567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전화번호	02-123-1234
	주소 ¹⁾	(실거주지 주소):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11번지					휴대전화	010-1234-5678
							전자우편	abcdef@gmail.com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부인	김ㅇㅇ	601111-11234567	동거	-	고혈압	없음	없음	02-123-1234	

1. 배우자 관계2) ([] 법륜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3): _____
3. 국외출생자명4):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5): _____, _____

부양의무자 ³⁾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전화 번호
	홍길동의 아들	홍00	876543-1234567	경기 부천시 ㅇㅇ구 ㅇㅇ동	2	032-123-4567
	의					
	의					
	의					
	의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4)
	본인	홍길동	00은행	123456-78-90123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1) 주민등록상과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 3) 해당자에 한함
4), 5)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7) 동일보장가구의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7) 동일보장가구의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뒷면)

- ① 뒷면에서 받고자 하는 급여 항목에 모두 √ 표시
- ② 급여계좌에 구비해간 통장 정보 기입
- ③ 원하는 통지방법(서면/전자우편/문자메시지/전화 등 기타) 선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장구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자가 ☐ 임차) ☐ 기타9) ☐ 교육급여	
영유아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가정양육수당 []장애통합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아동수당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청소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신청 []미신청] [통신사: []KT []SK브로드밴드 []LG U+ []SK 텔레콤 []기타()] [인터넷 가입(예정)자 설명: , 주민번호:]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연장신청)	
노인	[]기초연금([]배우자 동시신청)	
장애인	[]장애연금([]배우자 동시신청 []차상위 부가급여) []장애수당[]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지원자금 대여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타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시설이용□입소 []차상위 자선형성 []타법 의료급여10)() []개발제한구역 거주인 생활비용보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감면서비스	전체신청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신청	[] 전기요금	[] TV수신료 면제 [] 휴대전화요금 [] 지역난방요금 [] 도시가스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센터: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이동통신사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사업자명: 고객번호:)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사항	신청인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ㄱ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공데이터)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	-----

선택적 동의	동 의 (r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업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동 의 (r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2021 년 00 월 00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8)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방법

- ①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사항에 대해 상세히 적습니다.
- ② 소득이 없는 경우 모두 0원으로 작성합니다.
- ③ 한달 평균을 어렵해 작성하면 됩니다.

[별지제1호의2서식] (개정 2019.4.1)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설명1)		홍길동								
소득 사 항	근로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사업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	()	()	()	()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기타소득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재 산 사 항	건축물(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지		원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원	
	자동차		□ 자동차명()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기용)		원		원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원)		□ 상가보증금(원)		□ 기타(원)		원	
	금융재산		원		원		원		원	
	동산	□ 소 (마리 원)	분양권		원		원		원	
		□ 돼지 (마리 원)	조합원 입주권		원		원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회원권		원		원		원	
		□ 중요 (원)								
		□ 기계·기구류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타 (원)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부 채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원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3)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2020년 01월 01일										
신청인(대리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설명
- 2) 공적이전소득: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 4) 가구특성지출비용: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방법

- ① 수급가구의 세대주 및 가구원, 부양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② 부양의무자로부터 직접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주민센터 혹은 구청에서 부양의무자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발송합니다.
- ③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급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1.1.1> [앞면]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본인	홍길동	340101-1234567		
2. 금융정보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인감으로 동의한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친필 한글 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 ³⁾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아들	홍반장	580000-1234567	(서명 또는 인)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도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2021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계해체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는 지자체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소명서는 공통지정양식이 없으며 주민센터 마다 비치해둔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을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 소명서에는 수급자 본인의 이름, 주소지, 해체 사유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면 됩니다.

※ 관계해체란 연락이 두절 된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년에 한 두차례 왕래하고 연락을 한다고 해도 실제 부양하지 않고 있다면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 명 서		
1. 제목	부양의무자 관계해체 소명	
2. 당사자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시 종로구 홍길동 1017번지
3. 의견	저는 현재 아는 동생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폐지를 주위 생계를 꾸렸으나 다친 이후 생활을 꾸리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하에 아들이 한 명 있지만 이혼한 후 집을 나와 연락이 끊긴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어 부양을 받기 어렵습니다.	
4.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01월 01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홍길동 1017번지 (전화 : 02-706-1233) 성명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종로 1~4가 동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해간 서류와 작성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수급신청을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신청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수급신청을 구두로 거절당해선 절대 안 됩니다. 동주민센터나 구청 직원에게는 수급신청을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2. 급여별 심사

▷ 소득기준 및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등을 고려하여 각 급여별 담당 부처에서 선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 30일 내에 처리 후 통보.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3. 결과 통보

▷ 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수급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으로도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수급 신청 시 본인에게 적절한 통지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급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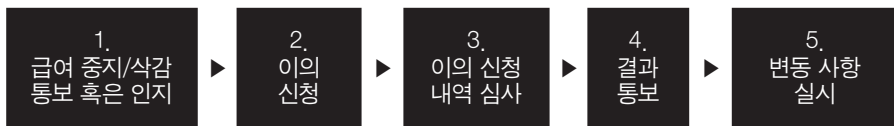
▷ 수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로 간주하며, 선정될 시 신청일로부터의 급여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심사 중 긴급복지를 이용하였을 경우 긴급복지를 통해 지원받은 액수를 제한 금액을 지급)

▷ 통장에 지급된 각 급여액과 07p에 있는 각 급여별 보장수준을 비교하여 확인해봅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통장은 ‘압류방지통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2.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 및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



1. 급여 중지/삭감통보 혹은 인지

▷ 급여의 중지, 삭감 등 변동 통보를 받거나 알게 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양식에 사유를 작성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도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구두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내역 심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30일 이내 처리 후 통보 (사유에 따라 처리기한은 15일, 30일, 60일).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사유에 따라 연장시한도 45일, 60일, 90일)

4. 결과 통보

▷ 수급신청결과 통보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수급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병행 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시 본인에게 적절한 통지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변동사항 실시

▷ 급여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소급적용하여 변동 내역을 실시합니다.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660606-1234567		
	주소	서울시 OO구 OO동 11번지			전화번호	02-123-4567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처 분 내 용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2020년 01월 01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처분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이의신청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8조, 「아동수당법」 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01월 01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안내사항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누구나 부당한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또한 수급신청과 마찬가지로 구두로 거절당해선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수급자의 권리

1. 부양의무자기준 탈락?

- ▷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탈락했지만 실제 부양받지 못하고 있을 시 소명을 통해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최근에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각 지자체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부양의무자와의 부양 단절을 인정하고,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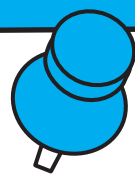
2. 근로능력평가와 조건부수급?

-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 을 받게 됩니다.
- ▷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역량평가를 통해 80점 이상일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80점 이하일 경우 자활센터로 배치됩니다.(80점 이상이라도 욕구조사 결과 자활사업 참여 를 희망할 경우 자활사업 참여 가능) 건강상, 개인적인 사유로 일반시장 취업 이 어려운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취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거나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 내려지거나 수급비 삭감, 탈락 통보를 받는 경우에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3. 수급자의 권리!

- ▷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전 국민의 권리입니다. 누구나 빈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복지 수급의 신청과 이용과정에서 낙인감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 ▷ 사회권은 이 사회에 사는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적극적인 인권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 보장을 통해 우리 사회 모든 이들의 사회 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현재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는 선정기준이 낮고 까다로우며, 선정된다 하더라도 보장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복지수급자는 잘못된 복지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복지수급자의 힘으로 더 나은 복지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는 단지 복지수급자들의 현실을 더 낮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예비 빈곤층(가난에 빠질 수 있는 모든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3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진짜 문제점, 이렇게 바꾸자

1.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호 과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신청가구의 소득·재산과 더불어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들과 혼인한 계부·계모, 사위와 며느리가 포함됩니다. 이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수급신청 가구의 소득이 0원이라고 해도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지만 함께 살지도 않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고, 당선이후 2020년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담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발표된 <제2차 종합계획>에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완화, 의료급여에서는 완화계획조차 담기지 않았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필요한 수급신청가구에게는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과거 대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구성이 핵가족, 1인 가족으로 분화했습니다. '부모의 노후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002년 70.7%에서 2018년에는 26.7%로 2/3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가족과 정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응답은 18.2%에서 48.3%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복지의 첫 번째 책임자는 가족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복지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합시다. 빈곤 사각지대에서 굶어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재난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재난상황에 방치하지 맙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1호 과제입니다.

2. 생활 필수 지출조차 할 수 없는 생계급여를 현실화 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비는 너무 낮습니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수급비는 기준중위소득 30%로 1인 가구 기준 최대 52만 7천원에 불과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2017년 정부는 행정운영과 결정을 위한 통계자료를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다른 기준 중위소득이 높게 나타납니다. 변경된 통계자료를 통해 2021년 기준중위소득의 필요 인상분은 10% 넘게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필요 인상률의 1/4수준으로 2021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경기가 좋다고 높게 결정된 적 없던 수급비 인상률이 경제위기를 이유로 낮게 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을 수급자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근거 없이 예산에 짜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수급비를 현실화하여 수급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배움을 포기하는 빈곤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3. 현실성 없는 재산의 소득환산제와 가짜소득 부과 전면 개편하라!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소득이 없음에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도시규모별로 소득환산에서 제외시키는 ‘기본재산 공제액’은 조금씩 늘려왔지만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고보다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4.17%는 기본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2년 동안 소진한다는 논리로 설정되었습니다.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6.26%는 재산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일반재산보다 1.5배 높게 설정되었을 뿐입니다. 더욱이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100%로 당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초했습니다.

낮은 기본재산액과 과도한 소득환산율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건강이 더 나빠져 근로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집을 팔고 더 가난해질 때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생활고를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 역시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진정 국민들의 최저한의 삶과 자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면, 있지도 않은 소득과 부양비를 간주하는 가짜소득은 없어져야 합니다.

현실적인 사회 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정부편의에 따른 전문가 및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어서 수급권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개편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와 및 강제근로 조항 폐지하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수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을 받는 ‘조건부 수급’을 받게 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확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수급비가 깎이거나 ‘조건불이행’이라는 이름으로 수급권을 박탈당하기도 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판정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수급권자들과 가장 근접한 동주민센터 전담공무원의 업무였던 근로능력판정은 객관성 확보라는 명목 하에 2010년 ‘근로능력평가 제도’ 도입으로 수량화되었습니다. 이후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시, 군, 구 단위에서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이관 받아 시행했고, 2012년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 업무가 위탁되었습니다. 2012년 ‘근로능력있음’ 판정 비율은 5.6%에 불과했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평가를

시작한 2013년에 근로능력 있음 판정 비율은 15.2%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단순한 근로능력평가지표 몇 가지로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평가지표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근로능력평가에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실제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 있음” 판정으로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병이 악화되어 죽음을 맞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죽음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년 사망한 송파 세 모녀 경우에도 심한 당뇨와 고혈압으로 일하기 힘들었던 큰딸은 기초법상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은 근로능력평가는 근로능력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이들을 사각지대에 가두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 받아도 취업할 곳이 없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능력평가는 수급권자들의 이의신청도 묵살하고 있으며 ‘어쨌든 일을 하거나 수급권을 포기하라’는 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이를 연금공단이 인정하지 않거나 취업할 능력이 없는 수급자들에게 ‘근로능력 있음 판정’은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제대로 된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일할 만한 좋은 환경과 조건을 함께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빈곤층을 내몰 것이 아니라 탈 빈곤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줬다 뺏는 기초연금 없애고, 노인빈곤 줄이자!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7%(2018년 기준)로 두 명 중 한 명이 빈곤에 처해있습니다. OECD가입국 평균 12.9%와 비교했을 때, 4배가량의 압도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들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게는 줬다 뺏고 있습니다. 수급노인들에게도 매 달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만 지급된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고 수급비에서 깎기

때문입니다. 낮은 수급비 때문에 고통 받다가 기초연금 인상에 희망을 걸었던 빈곤노인들은 ‘너무 치사하다.’, ‘분통이 터진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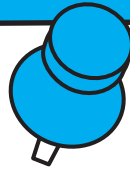
해결방법은 단순합니다.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연금/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아동수당 등은 수급비와 관계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와 아동양육의 특성상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역시 노인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개념으로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노인빈곤을 해결하겠다는 기초연금은 빈곤상태에 처한 노인들에게 ‘줬다 뺏은 기초연금’으로 수급노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수급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온전히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6. 주소지가 없는 사람들도 수급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 등지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들이 신청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서에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으로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거리나 만화방, PC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리노숙종인 경우에는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주소지를 얻은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렵게 주소지를 만들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까지 2개월 이상 걸리는 조사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 주소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겨우 선정되더라도 주소지 상실로 인해 곧바로 수급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가 없어서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소지가 없더라도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수급권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의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4부

부록

임대주택 정책 둘러보기

의료지원 정책 둘러보기

답답할때? 상담전화

부록1. 임대주택 정책 둘러보기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과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계약체결 후 공급하는 매입형,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는 임차형 세 가지로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선정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으로 하며, 임대주택별로 가구월평균소득의 %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동일 순위일 경우 점수표에 따라 선순위 배정이 달라집니다.

※ 구체적인 점수표 등의 내용은 주거복지센터 등 상담전화로 문의주세요.

○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확인하세요!

▷ 세대주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①세대주 / ②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 ③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이면 됩니다.

▷ 신청자는 만19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①자녀를 부양하는 미성년 ②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③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불가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자산기준 충족 /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가구 등이 기준이 됩니다.

○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50%	1,495,816	2,281,268	3,120,260	3,547,103	3,547,103
60%	1,794,979	2,737,521	3,744,312	4,256,523	4,256,523
70%	2,094,142	3,193,775	4,368,364	4,965,944	4,965,944
100%	2,991,631	4,562,535	6,240,520	7,094,205	7,094,205
120%	3,589,957	5,475,042	7,488,624	8,513,046	8,513,046
150%	4,487,447	6,843,803	9,360,780	10,641,308	10,641,308

▷ 청약저축 가입 여부(신청 시 무관) / 청약저축 적립 개월 수가 중요합니다.

▷ 신청창구가 어디인지(동주민센터/인터넷 등),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 순위 및
배정표를 확인하세요.

▷ 보증금 지불 능력 및 월임대료 지불 능력 / 보증금 지불 능력 안 될 경우 (대출,
기타 지원제도) 계약기간 내 적정 보증금 투입계획도 필요합니다.

▷ 이사 일정 확인(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금 납부 이후 2개월 동안 잔금지불
기간을 가질 수 있음) / 이사시 비용과 인력의 유무 / 이사 후 연체 시 상담창구 연계

▷ 연체 시 연체 임대료 분할납부 가능한 방법 등 확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구분	영구임대	50년공공임대 (재개발)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임대사업자	LH공사, SH공사				
임대기간	50년(30년/10년)		30년	20년	6년 20년
주택규모	49㎡ 이하	60㎡이하			
입주가격	수급자 유공자 한부모	철거민 청약저축 도시근로자 70%	도시근로자 70%	도시근로자 100%	
임대조건	시세30%	시세90%		시세80%	시세60~80%
매각여부	불가				

구분	10년 공공임대		5년공공임대	분납임대
임대사업자	LH공사, SH공사 등			
임대기간	10년		5년	10년
주택규모	85㎡ 이하	149㎡ 이하	85㎡이하	
입주자격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			
임대조건	시세90%	시세이내	시세90%	30%-입주전 20%-4년차 20%-8년차 30%-분전시
매각여부	10년 후 분양		5년 후 분양	10년간 대금분납
문의	☐ LH공사 대표번호 1600-1004 문자서비스 등록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 SH공사 대표번호 1600-3456 문자서비스 등록 홈페이지 www.i-sh.co.kr ☐ 서울주거포털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 전세임대포털사이트 https://jeonse.lh.or.kr			

1. 영구임대주택 - 공고기간 내 신청

영구임대주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공급대상	세부자격	자산기준
일반 공급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가구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포함)을 부양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자	*총자산(자동차 포함-자동차 2,497만원, 금융자산 및 부채포함) 2억1550만원 이하 입주 및 재계약 가능 * 영구, 매입, 전세 모두 적용
	2순위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월평균소득 100%이하	* 해마다 기준 변경 내용 확인
우선공급	① 국가유공자 보호대상자 민주유공자 및 가족 등(공급 물량의 10%) ② 신흥부부(공급 물량의 10%) -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3. 귀한 국군 포로(시도지사 결정)	한시적 적용

지원내용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9㎡ 이하 (가구원수별로 신청 가능한 크기가 달라짐)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체결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 수준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9㎡ 이하

신청방법



입주기간

○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이 경과되면 다시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거주 가능

임대료

○ 두 공사 모두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전환 60% 허용
(전환율 LH 6%, SH 6.7%)

(단위: 원)

구분	수급가구		수급가구 외 가구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강북 40㎡	3,573,000	71,160	10,225,000	115,150
방화 33㎡	2,775,000	55,270	13,071,000	148,110

감안할 점

○ 대부분 1989년과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주택으로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한 편입니다. 신청 이후 입주대기기간이 비교적 긴 편입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 신청한 단지별, 전용 면적별로 경쟁하여 선정되며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로 대기자를 선정합니다.
-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세대원 수, 가점 배정에 따라 계산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 종합점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전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문의바랍니다.

2. 기존주택(다가구) 매입임대주택 - 공고기간 내 신청

LH 및 SH공사가 도심 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이 최장 20년 까지 거주(계약회수 10회, 계약기간 2년 최장 2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입주대상	임대조건
일반주택 매입임대 주택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 또는 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미달(입식부엌, 화장실미비) 혹은 RIR30%이상인 자 - 65세 이상 기초법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고령자 - 장애인등록증교부자 중 도시근로자가구소득 70%이하 ☐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 월평균소득 50%이하 가정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최장20년) ☐ 임대보증금: m당 89,620원(전국평균 약 450만원) ☐ 월 임대료: 시세의 30%에서 보증금 제외 금액(약 10~20만원) *고령자유형 신설 - 만65세 이상이면서, 1~2순위 고령자 공급물량에 지원한 사람 - 임대기간 : 평생 거주가능
19~39세 청년 매입임대 주택	☐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한부모 및 차상위계층 ☐ 2순위: 본인과 부모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3순위: 본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임대기간: 최장6년(2년마다 재계약, 입주 후 혼인시 최장20년) ☐ 월 임대료: 시세의 40~50% ☐ 보증금 : 100~200만원
신혼부부 매입임대 I, II	☐ 혼인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또는 혼인가구 ☐ 1순위 -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살펴봐야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I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이하) 임대기간: 최장20년 - 임대조건: 시세의 50%이하 ☐ 신혼부부 매입임대II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이하) 임대기간: 최장 6년(有자녀시 최장10년) - 임대조건: 시세의 80%이하 *신혼 매입2유형 4순위 신설 - 모든 혼인(婚姻)가구 - 기준 : 월평균소득120% 이하+자산 완화 (맞벌이 경우 140% 이하)

공동 생활 가정	☐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한부모 ☐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경생보호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 인 등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횟수제한 없음) ☐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무료 원칙 - 자체 운영기관에 따라 임대료/ 관리비 징수 가능
주거취약 계층 주거지원	☐ 쪽방 ☐ 고시원 ☐ 여인숙 등에 3개월이상 거주+월평균소득 70%(1인가구), 60%(2인가구), 50%이하(3인이상 모두)인 자로 거주지 관할 시장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통보한 자 등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최장 20년) ☐ 쪽방, 고시원, 여인숙, 피시방, 반자하 등 -임대보증금: 50만원(매입, 전세임대 동일) -월 임대료: 시세의 30%에서 보증금 제외한 월세환산액 ☐ 비닐하우스, 범죄피해자: 일반전세임대 동일 (*SH는 전세임대주택 공급하지 않으며 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하고 있음)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 중 시장, 구청장이 LH공사/SH공사에 통보한 자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최장 20년)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시세의 30%에서 보증금 제외 금액

신청방법

○ 입주대상자가 공고문 내 주택 리스트의 입주희망 주택을 직접 방문한 뒤
시·군·구에 신청(* 동주민센터 신청)→ SH공사 및 LH가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매입·개보수 → 시·군·구의 추천대상자 입주

※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유형별로 신청장소, 방법이 다르니 공고문을 잘 읽어보세요.

임대료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정부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매입한 가격에 의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정해지는데,
보증금은 시중 전세가격의 30~35% 수준임.

○ 보증금 LH 평균 400만원 / SH 평균 1000만원~2000만원, 지하층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갖는 지상층 임대보증금의 2/3 수준으로 결정 / 월 임대료는
100,000원~350,000원선으로 책정됨

※ SH공사의 경우 ‘서울시사회복지기금’ 대출을 연계 최대1천만원의 보증금을

확보(무이자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사용상 제한이 있습니다.

감안할 점

○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것으로 전세임대주택에 비해 안정적이지만 주택위치가 정해져 있고 공급물량이 매우 적으며 대도시의 경우 보증금 수준이 전세임대주택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3. 기존주택 전세임대 - 일반전세임대 공고기간 내 / 신혼부부 청년 수시 신청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주택을 확보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반전세(보증부월세), 주거용 오피스텔도 요건에 부합하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유형 및 신청자격

구분	기존주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목적	도심의 최저소득계층 생활권 내의 주거안정 지원	사회경제적 취약 아동 청소년 주거안정
임대사업자	LH공사/SH공사(지방공사)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9회 재계약(최장 20년)	만 20세 이후 2년 단위 최대 3회 재계약
주택규모	85㎡ 이하 (※1인 거주 시 60㎡ 이하)	

입주자격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 / 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미달 혹은 RIR30% 이상인 자 / 소득70%이하 장애인 /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 2순위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장애인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자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 RIR30%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장애인	☐ 친인척위탁가정 ☐ 소년소녀가정 ☐ 대리양육가정 ☐ 교통사고유자녀가구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등 : 만 20세 이후 3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전세금의 연2%임대료의 절반까지 할인됨.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5%	만 20세까지 무상
월임대료	기금의 연2%* / 통상 10만원-18만원	

입주유형 및 신청자격 (신혼부부 / 청년 전세임대)

구분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목적	신혼부부, 아동포함 가구 주거안정	청년 주거비 부담해소
임대사업자	LH공사/SH공사(지방공사)	LH공사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2년 단위 3회 재계약 (최장 6년)
주택규모	85㎡ 이하 (1인 거주 시 비장애인 50㎡ / 장애인 60㎡ 이하)	60㎡ 이하
입주자격	☐ 1순위 : 가구당월평균 소득 70%이며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및 입양하여 미성년 (만18세 이하) - 유자녀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유자녀 한부모가족	※대학소재지 외 타지 시군 출신 대학생, 취업준비생 ☐ 1순위 : 수급자(생계의료급여),보호대상한 부모가족,아동복지시설퇴소자,월평균소득70% 이하 장애인 ☐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생 ☐ 3순위 : 1,2순위 비해당 대학생과 취업생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	100~200만원 수준
월임대료	기금의 연2%* / 통상 10만원-18만원	8~20만원 수준

지원내용

○ 지원한도

① 일반맞고령자 전세임대 : 수도권 1억1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6천만원 / ② 소년소녀 전세임대 : 수도권 1억1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6천만원(아동2인 이상 2천만원) / ③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전세임대 : 수도권, 광역시 1억1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6천만원 / ④ 신혼부부(1), 유자녀·다자녀 전세임대 : 수도권 1억3천5백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8천5백만원 / ⑤ 청년 전세임대 :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 8천5백만원

※ 지원한도액 초과 시: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 계약 가능. 단,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가구원 수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 아동 2인 이상일 경우 추가지원금 있음.

※ 보증부월세 계약가능(*단, 임대료 3개월분 본인부담 보증금 포함),

※ 주택이외 주거용오피스텔 계약 가능함 / *입주 시 도배장판 시공(10년 단위 1회) /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화재보험 지원함

신청방법

○ 입주대상자가 시군구에 신청(※청년 및 신혼부부 수시, 인터넷 신청, 그 외 공고기간 내 신청) → 지자체 혹은 LH공사 가구선정 후 통지 → 지원자 거주 희망주택 본인물색(*부동산 통해) → 해당 주택의 임대인 동의 취득 → 임대인과 입주자,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함께 계약체결

감안할 점

○ 전세임대주택은 계약 가능한 주택물색이 쉽지 않은 점이 있지만,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낮추고 거주 지역을 유지해야하는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 고령자가 가구, 장애인가구 등의 이용이 많습니다.

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매입임대/전세임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복지시설 거주자 등에게 보증금이 저렴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상향 이동을 도모하고자 2007년부터 LH가 공급해 왔습니다. 2016년 SH는 매입임대주택을 소규모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SH는 주거취약계층전세임대주택은 공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만화방, 피시방, 컨테이너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방수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침수우려 지하거주가구,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선정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주거급여조사기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1인 70%이하, 2인 60%이하, 3인이상 가구 50%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구원수별 소득)

※ 기타자격: 자산(토지, 금융, 자동차 포함)21,000만원이하, 자동차2,479만원이하

지원내용(단위: 만원)

○ 지원한도 : 대상자 유형, 입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 (단위: 만원)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전세임대 지원 상한	11,000	8,000	6,000
매입임대 책정 임대료	LH매입임대주택 50만원, SH매입임대주택 100만원		

※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은 LH만 공급함.

※ 국토부의 비주택이주지원사업을 통해 보증금, 이사비, 가사가구집기 일부 지원함. 주거복지재단을 통해 선집행 후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동주민센터와 운영기관(주거복지재단에서 확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기간

○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이 경과되면 다시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감안할 점

○ 최근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어 수요가 급증한 것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경기의 경우 보다 안정적인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습니다. 타 임대 주택에 비해 입주신청이 복잡해 차별적인 점, 입주자선정점수표 등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5.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게 SH와(지방공사) LH의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SH와 LH에 통보한 자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 가구구성원이 무주택(긴급복지지원법 및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하는 이유)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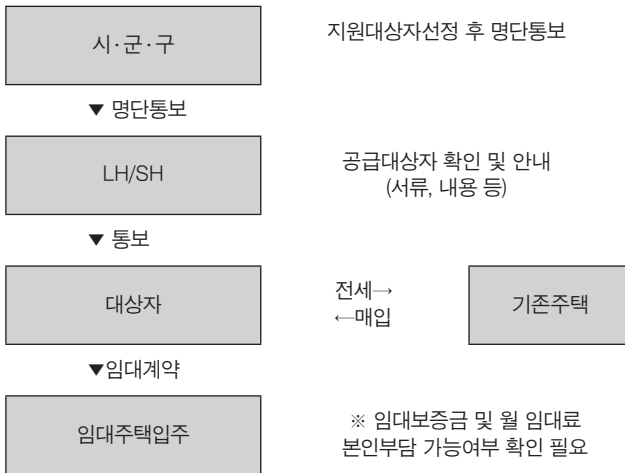
- 위기상황 유형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 지자체조례(*각 지자체 조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구분	전용면적(㎡)	임대료 수준
기존주택 매입임대	60㎡ 이하 (1인 50㎡이하)	- 보증금 300~700만원 - 월 임대료 5~12만원 수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85㎡이하 (1인 60㎡이하)	- 보증금 220~550만원 - 월 임대료 18만원 수준

※ 앞의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므로 입주 시 보증금 필요함.

신청방법



입주기간

-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이 경과되면 다시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감안할 점

○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자이거나 종료된 이후 3개월 내 신청할 수 있으나 긴급복지 제도 역시 대상자 선정기준이 엄격합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있어 본인부담보증금이 마련되어야 가능합니다.

6. 재개발임대주택 (SH)

재개발 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무주택세대주인 철거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전환 되지 않는 아파트형 임대주택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① 철거민 특별공급

- 1순위: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2순위: 당해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 3순위: 당해 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지구의 세입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
- 4순위: 당해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② 공가발생 일반공급

-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세대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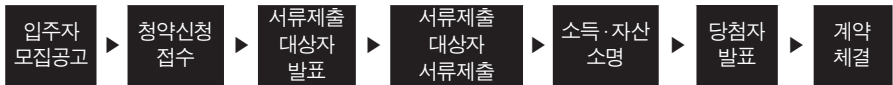
지원내용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신규 건설시 입주한 경우에는 50년까지 거주 가능하지만, 신규건설 이후 공가가

발생하여 입주한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소득기준 초과 시까지 지속 거주 가능)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건설비를 토대로 산정되므로 지역 및
건축년도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50년 공공임대주택과 유사
- 임대보증금 : 700~2,500만원, 월 임대료는 85,000~265,000원 수준

신청절차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인터넷 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현재 청약하는 임대주택 공고 클릭 → 단지 또는 지구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발급/소지

감안할 점

- 재개발지역 내 임차인에 대한 지원책이나 입주보증금이 이주보상비에 비해
비싸다는 점, 관리비가 취약계층에 과부담된다는 점, 공급량이 매우 적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이 다소 수행될 전망입니다.

7.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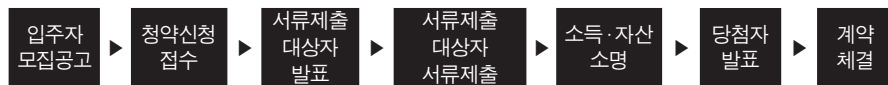
신청자격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및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아래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혼부부 특별·생애최초특별·노부모부양특별·다자녀특별·일반공급(전용60㎡이하공공주택만 해당)의 경우 일정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자산보유 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 자동차 '50년임대 2,468만원' 이하, '10년 임대 2,764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50년 공공임대 60㎡이하, 10년 공공임대 85㎡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건설비를 토대로 산정되므로 지역 및 건축년도에 따라 다름 시중 90%까지 적용

신청절차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인터넷 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현재
청약하는 임대주택 공고 클릭 → 단지 또는 지구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발급/소지

감안할 점

○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92년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중단되면서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차상위계층과 철거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릅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신청대상 폭은 확대되었으나 공급량이
적은 것이 현재 한계입니다.

8.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자체, LH공사, SH공사가 건설 및 공급하는 거주기간 30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70%이하인 자
- 총자산: (토지 및 건물)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일반 공급	전용면적 50㎡ 미만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70%, 100%이하인 자(저소득 우선 배정) ☐ 단독세대주 -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 50㎡ 미만까지 신청가능 ☐ 60㎡이상인 경우 - 도시근로자가구 100%신청 가능	☐ 서울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우선공급 -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 순위 내 경쟁: 미성년자녀(태아포함) 2명 이상인자, 당해 지역 거주자, 배점 높은 자 순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1순위: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 내 경쟁: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 인 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 높은 자 순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 기간에 임신 중/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로 국민임대 입주자격 해당자	☐ 1순위: 혼인기간 3년 이내 / 그 기간 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그 기간 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자녀가 있는 자
우선공급		1.사업지구 철거민 등(공급물량의 10%) 2.장애인 등(공급물량의 20%): 소득 50%이하(50㎡이하 만)→ 장애등급→ 배점순서로 공급 3.자녀 이상(공급물량의 10%) 4.국가유공자 등(공급물량의 10%) 5.영구임대주택 퇴거자(공급물량의 3%) 6.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공급물량의 2%) 7.신혼부부(공급물량의 30%): 소득 50%이하(50㎡이하 만)→청약순위→주택건설지역 거주자→자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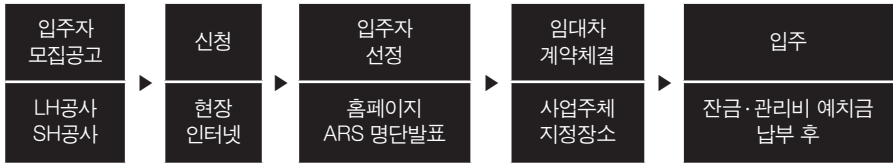
※ 참고: 상기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에 대한 배점 기준

-세대주나이(3점),부양가족수(3점),거주기간(3점),노부모부양(3점),미성년자수(3점),청약저축횟수(3점),
-중소제조업종사자(3점), 사회취약계층(3점), 건설공제부금적립(3점)

지원내용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60~80% 수준 보증금 3천만원~5천만원선, 임대료 20~30만원선

신청절차



9.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절감 및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 및 학교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특징

- 임대기간 및 면적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20년/ 그 외 대상별 상이 / 전용면적 60㎡ 이하
- 임대료 수준 : 시세의 60~80% 수준(평균보증금 : 3,700만원 임대료 : 28만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 청년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80%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이하)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제외)

신청자격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청년 : 만19-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 퇴직 후 1년 이내 「고용보험법」 제 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혼인중이 아닐 것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이거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일 것(※하반기 입주자모집부터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로 개정 및 확대)

- 한부모가족 : 태아를 포함해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주거급여 수급자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 ※ 무주택기간 관계없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무주택 자

구분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대학생 계층(본인) 총 자산	총 7,800만원 이하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계층	총 23,700만원 이하	2,468만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총 28,800만원 이하	

신청방법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신청 또는 공사 직접방문 신청/ 인터넷 청약 접수

감안할 점

- 행복주택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보증금 및 임차료가 시세의 60%이상으로 책정되어 있고 비교적 협소한 규모로 부담가능성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10. 버팀목 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제도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통합,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은 80% 이내)인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자

지원내용

- 대출 금리는 가구원, 소득수준 및 임차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 1억원	1억원 초과
소득 2천만원 이하	1.8%	1.9%	2.0%
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8%	2.1%	2.2%
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2%	2.3%	2.4%

신청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가능

11.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가구의 증가를 감안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은행권으로 통해 진행하므로 금융채무연체자(신용불량)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 우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내용

- 대출한도: 매월 40만원 이내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금리: 우대형 연 1.0% / 일반형 1.5%
- 신청시기: 월세임대계약 사실이 증빙 될 경우 가능

신청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가능

12.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만 19~69세 이하의 청년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① 현재 근로 중인 청년 / ② 취업준비생 : 현재 근로종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 계약
-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융자최대한도: 최대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의 연 2% 이자 지원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사이트 정보검색 및 인터넷 접수 (<http://housing.seoul.go.kr>)
- 문의처: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13.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내용

- 융자최대한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의 연 최대 3.6% 이하 이차 지원

부부합산 연소득	지원금리
0~2 천만원 이하	3.0%
2~4 천만원 이하	2.0%
4~6 천만원 이하	1.5%
6~8 천만원 이하	1.2%
8~9.7 천만원 이하	0.9%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사이트 정보검색 및 인터넷 접수 (<http://housing.seoul.go.kr>)
- 문의처: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1599-9999), 하나은행(☎1599-2222), 신한은행(☎1599-8000)) 또는 다산콜센터(☎120)

13. 서울형 주택바우처 (일반/특정)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주택 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 일반

- 서민간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0%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44	3,454,424

지원내용 - 일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금액(원)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신청자격 - 특정

- 민간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서울시내 쪽방 또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

지원내용 - 특정

구분	1~2인	3인 이상
금액(원)	120,000	150,000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및 신청 가능

14. 서울형 기초보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요건에 맞지 않아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서울에 거주하며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소득환산율 100%적용 자동차 기준이 적합한 가구
- 부양의무자기준 : 소득 연 1억 이하 / 재산 9억 이하

지원내용

- 생계급여(소득구간별 차등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와 동일)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최대	274,175	463,212	597,593	731,444	863,606
최소	91,392	154,404	199,198	243,815	287,869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및 신청 가능
- 문의 다산콜센터(☎120) 또는 해당 거주지 동주민센터

17.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위기에 처한 서울 시민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위기 가구에 필요한 생계 및 의료 물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

※ 단,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기준 2억 5,7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85%	1,553,656	2,624,867	3,386,358	4,144,847	4,893,767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0년 7월1일~2021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운영 (재산기준 3억 2,60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1,000만원 이하)

위기사유

-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④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⑧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추가 위기사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지원

지원항목	1인	2인	3인	4인 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교육비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수업료+입학금)			
의료비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00만원 이내			
기타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 동주민센터, 구청, 다산콜센터 (☎120)

부록2. 의료지원정책 둘러보기

- 정부 의료비 지원 사업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

대상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50%	913,916	1,554,040	1,991,975	2,438,154	2,876,687

지원내용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40%

○ 상급종합병원 2인·3인·4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3인·4인실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각 50%, 40%, 30%이며,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2인·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3인실의 경우 각 40%, 30%를 부담

※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 본인부담률 80%적용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대상

- 입원 : 모든 질환
- 외래 :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
- 기타 : 상기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한국회귀 필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소득/재산기준

- 가구원수,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50%) 이하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 지원상한액 : 연간 2천만원 한도
-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 지원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제외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로,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신청방법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공휴일포함) 이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다만 입원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이전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대상

①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함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지정된 대상질환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속·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소속·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 급여 중 본인 부담금	진료비	-	○	-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	○	-	-
	보조기구 구입비	-	-	○	-	-
	호흡보조기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간병비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

지원범위

- 만성신장병 요양비 지원대상질환 : 만성신장병(N18)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대상질환(93개 질환)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 (103개 질환)
- 간병비 대상질환 (97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 (28개 질환)

지원제외 대상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 입원료

신청내역 및 범위

지원내역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 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110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2 만성 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약관류액 및 자동복약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3 보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9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 장애인등록자
	①-4 인공 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간병비		월 30만원	9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중족하는자(기준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③특수식이구입비		특수제조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 만 19세 이상 ※ 19세 미만 생일이 숙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4.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① 소아암 환자

- 만 18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금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등)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 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지원금액

- 백혈병: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② 성인암 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암종: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① 국가암검진(비용 지원대상자 외 본인부담금 발생 포함) 대상 당해연도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

② 과거 연도 국가암검진 수검 이후 만 2년 이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로, 해당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만족하는 암환자(2021년: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2020년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의료급여수급권자: 연간최대 220만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연속 최대 3년 지원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 국립암센터 (☎1588-8110)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 지원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제7조 만성질환자	원내직접제조	1,500원	750원
			그 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원내직접제조		1,500원	전액	
	그 외의 경우		1,000원	전액	
	제 2차 의료급여 기관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 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6.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

지원대상

- 만60세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진단받은 치매환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20%	2,193,000	3,706,000	4,781,000	5,852,000	6,909,000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부과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직장가입자 (장기요양 포함)	75,224 (83,890)	128,342 (143,127)	165,968 (185,088)	203,558 (227,008)	237,681 (265,062)
지역가입자 (장기요양 포함)	30,663 (34,195)	117,560 (131,103)	168,444 (187,849)	216,474 (241,412)	259,446 (289,334)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7.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타 가사·간병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신체수발(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건강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지원(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발급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55,200원	면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나형)	월 355,200원	월 333,890원	월 21,31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87,610원	월 11,990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나형)	월 399,600원	월 375,620원	월 23,98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	월 592,000원	월 592,000원	면제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보건복지콜센터 (☎129)

8.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가수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5인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지원내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서 차등지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발급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부가가치세 포함)
- ※ 자세한 내용은 문의 전화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9.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①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제충이 2.5kg 미만의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신생아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의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한도

1.0kg미만	1.0~1.5kg미만	1.5~2.0kg미만	2.0~2.5kg미만 재태기간37주 미만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300만원

②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출생 후 1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자로서 출생 후 1년 이내 치료를 위해 입원 및 수술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의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 1인당 최고 500만원,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90%를 적용하여 지원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 한해 의료비 지원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관할 보건소

주요 민간단체 의료비 지원사업

-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 (<http://heart.or.kr> , ☎02-414-5321)
 - 취약계층 심장병 강좌 및 무료 진료
 - 만18세 이하 선천성 심장병 및 장기이식을 포함한 질병의 수술환자의 수술비 지원
 - 만19세~70세 심장병 수술 및 시술, 장기이식 수술비 지원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http://childfund.or.kr> , ☎1588-1940)
 - 빈곤가정 아동 학습비, 보육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http://kord.or.kr> , ☎02-714-5522/8338)
 - 희귀난치성질환 각종 검사, 입원 및 수술치료, 재활치료 등 의료비 지원

- 아름다운재단 (<http://beautifulfund.org> , ☎02-766-1004)
 - 저소득 이른둥이(미숙아) 재활치료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 지원
 -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의 육아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 500만원 내외 지원
 - 재가 치매노인 보조기기 200만원 이내 최대 4품목 지원
 - 장애아동 친환경 DIY 보조기기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s://chest.or.kr/> , 02-6262-3000)
 - 저소득가구 기초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 ※ 재단에 따라서는 사회복지관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처 사회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 ※ 신청 시기, 지원 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록3. 답답할때? 상담전화!

1. 각종 상담전화 *국번없이

	기관	전화번호	상담내용
복지상담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1	건강권,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국민연금콜센터	1355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종합민원센터
	보건복지 콜센터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임대주택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금융상담 (파산/면책)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1833-6008	파산, 면책, 금융상담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파산, 면책, 금융상담
홀리스 복지 상담	홀리스행동	02-2634-4331	홀리스복지, 홀리스인권상담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02-777-5217	홀리스복지상담
	브릿지종합지원센터	02-363-9199	홀리스복지상담
	영등포보현의집	02-2069-1600	홀리스복지상담
	서울역쪽방상담소	02-3789-5119	홀리스복지상담
	돈의동쪽방상담소	02-747-9073	홀리스복지상담
	영등포쪽방상담소	02-2068-4353	홀리스복지상담
	대구쪽방상담소	053-356-3494	홀리스복지상담
	부산동구쪽방상담소	051-462-2017	홀리스복지상담
	인천쪽방상담소	032-772-6630	홀리스복지상담
	위기대응콜센터	1600-9582	홀리스복지상담
인권상담	국가인권위원회	1331*	인권상담
	국민권익위원회	110*	공익신고(부패행위 등)
	인권운동사랑방	02-365-5363	인권상담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성희롱, 성폭력
청소년· 자살	생명의전화	1588-9191	위기/자살/도박 상담
	중앙자살예방센터	02-2203-0053	자살예방/상담
	청소년상담전화 헬프콜	1388*	청소년고민, 가출, 구조요청 등

장애인 차별·복지 상담	장애인보조기구 콜센터	1670-5529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	장애인복지/인권/차별 상담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02-738-0420	탈시설/자립, 장애인복지
노동·법률 상담	고용노동부	1350*	고용보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
	민주노총	1577-2260	노동상담
	서울노동권익센터	02-376-0001	노동상담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1670-0121	법률상담

2.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연락처

* 서울시주거복지센터는 주거위기사황에 처했거나 주거안정을 원하는 시민에 대해 가구상황별 상담과 주거지원서비스, 긴급주거비지원을 비롯해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사례관리를 수행합니다.

* 2013년 서울시주거복지기본조례로 설치된 주거복지센터는 2017년까지 10개소가 운영되어오다 2018년 3월 서울시의 공모를 통해 25개 자치구 전역에 주거복지센터를 확대·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명	전화번호	주소
강남주거복지센터	070-5008-9216	강남구 광평로 295 사이룩스 서관 309호
강동주거복지센터	02-6933-6870	강동구 올림픽로 660, 엘크루 507호
강북주거복지센터	02-980-4808	강북구 삼양로 333, 2층
강서주거복지센터	02-2661-0896	강서구 방화동로 126 삼성코아상가 B23호
관악주거복지센터	02-875-3197	관악구 중앙2길 16 2층
광진주거복지센터	02-2138-8373	광진구 긴고랑로 41, 공유공간나눔 4층
구로주거복지센터	02-853-9275	구로구 구로동로 26길 54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별관 2층
금천주거복지센터	02-855-4522	금천구 두산로 70, B동 1311-2호
노원주거복지센터	02-930-1180	노원구 상계로 23길 17, 원터행복발전소 3층
도봉주거복지센터	02-6958-8081	도봉구 도봉로 152길 26, 렉시온프라자 204호
동대문주거복지센터	02-2138-1901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602호
동작주거복지센터	02-816-1688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7, 주공1단지 상가 202호

마포주거복지센터	02-6383-6100	마포구 월드컵로 190 이안상암2차아파트 208호
서대문주거복지센터	02-303-3733	서대문구 거목골로 4-18, 1층
서초주거복지센터	02-6202-9000	서초구 청계산로9길 1-3, 서초선포레 1층
성동주거복지센터	02-6933-8051	성동구 고산자로 253, 다남매타워 1204호
성북주거복지센터	02-922-5942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길음환승주차빌딩 705호
송파주거복지센터	02-400-2271	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
양천주거복지센터	02-6933-6190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프라자 501호
영등포주거복지센터	02-785-7044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302호
용산주거복지센터	02-6713-5055	용산구 한강대로 251, 서조빌딩 3층
은평주거복지센터	02-388-2979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트 미래청 506B
종로주거복지센터	02-722-8658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9 해와달빌딩 3층
중구주거복지센터	02-2138-8791	중구 마른내로 156, 광희빌딩 별관 6층
중랑주거복지센터	02-3421-8961	중랑구 신내로16길 33, 신내의료안심주택 상가102호

3. LH 주거급여 사무소 (전국49개) 연락처

주거급여 사업소			
소속	지역	관할구역	전화번호
남부권지사	남부권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 동구,동작구,관악구	02-2182-2751 /2757
서부권지사	서부권	영등포구,양천구,구로구, 금천구,강서구	02-2169-8835
서울	중부권1	성북구,동대문구,성동구, 중랑구,광진구	02-964-4211
	중부권2	종로구,중구,용산구,마포 구,서대문구,은평구	02-762-3160
	중부권3	도봉구,노원구,강북구	02-3392-2672
의정부권지사	의정부권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 시,양주시,연천군	031-822-4055
남양주권지사	남양주권	남양주시,가평군,양평군, 구리시,하남시	031-590-6637

인천	인천남동권지사	인천남동권	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 옹진군	032-717-5271
	인천북서권지사	인천북서권	부평구,계양구,동구,중구	032-717-8579
	부천권지사	부천권	부천시,광명시,시흥시	032-712-5216
	김포권지사	김포권	인천 서구,김포시,강화군	031-8048-5411
	고양권지사	고양권	고양시	031-927-3061
	파주권지사	파주권	파주시	031-934-5643
경기	성남권지사	성남권	성남시,광주시	031-723-9861
	용인권지사	용인권	용인시,이천시,여주시	031-280-4773
	화성권지사	화성권	화성시	031-831-2420
	평택안성권지사	평택안성권	오산시,평택시,안성시	031-668-9041 /9042
	수원권지사	수원권	수원시	031-323-9149
	안양권지사	안양권	안양시,의왕시,군포시, 과천시	031-467-5734
		안산권	안산시	031-411-7140
부산 울산	부산동부권지사	부산동부권	동래구,금정구,해운대구, 연제구,수영구,기장군	051-460-6931
	부산서부권지사	부산서부권	사상구,사하구,북구, 강서구	051-796-6032
		부산중부권	진구,동구,서구,남구,중구, 영도구	051-796-6054
	울산권지사	울산권	중구,남구,동구,북구, 울주군	052-916-1201 /1202
강원	주거복지사업부	춘천권	춘천시,홍천군,철원군,화 천군,양구군,인제군	033-258-4141
	원주권지사	원주권	원주시,횡성군,영월군, 평창군	033-737-7723
	강릉권지사	강릉권	강릉시,속초시,양양군, 고성군	033-610-5174
		삼척권	삼척시,동해시,태백시, 정선군	

충북	주거복지사업2부	청주권	청주시,진천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	043-901-4604
	충북동북부권지사	충북동부권	충주시,제천시,단양군,증평군,괴산군,음성군	043-820-9195
대전 충남	주거복지사업2부	대전권	동구,중구,서구,금산군	042-470-0268 /0265
	대전북부권지사	대전북부권	대덕구,유성구,논산시,계룡시,세종시	042-380-3441 /3442
	천안권지사	천안권	천안시,아산시,당진시,예산군	041-538-5828
	충남북부권지사	충남서남부권	공주시,보령시,서산시,보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태안군	041-854-8311 /8312
전북	주거복지사업2부	전주권	전주시,진안군,장수군,무주군,부안군	063-230-6295
		정읍면	정읍시,김제시,남원시,임실군,고창군,순창군	063-230-6339
	익산권지사	익산권	군산시,익산시,완주군	063-840-0956
광주 전남	광주광산권지사	광주광산권	서구,광산군,함평군,영광군	062-441-2912
	광주북부권지사	광주북부권	북구,담양군,장성군,곡성군,구례군	062-410-1963
	광주동남권지사	광주동남권	동구,남구,나주시,화순군	070-4171-4042
	목포권지사	목포권	목포시,강진군,장흥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신안군,진도군,완도군	061-983-3377
	순천권지사	순천권	순천시,여수시,광양시,보성군,고흥군	061-900-4352

대구 경북	주거복지사업2부	대구권	달서구,수성구,달성군,고령군,성주군	053-603-2775
	대구북부권지사	대구북부권	북구,서구,중구,남구,군위군,칠곡군	053-210-8362
	대구동부권지사	대구동부권	동구,경주시,영천시,경산시,청도군	053-960-3651
	경북동부권지사	경북동부권	포항시,울릉군,울진군,영양군,영덕군,청송군	054-280-4731
	경북서부권지사	경북서부권	구미시,안동시,영주시,문경시,상주시,김천시,예천군,의성군,봉화군	054-450-3884
경남	주거복지사업1부	경남중부권	창원시(마산,진해포함),통영시,거제시,고성군,함안군,창녕군,의령군	055-210-8635
	경남서부권지사	경남서부권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거창군,합천군,함양군	055-922-1551
	양산권지사	경남동부권	양산시,김해시,밀양시	070-7450-9175
제주	주거복지사업부	제주권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064-720-1093